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33

발 의 년 월 일 : 2025년 05월 26일
발 의 자 : 김혜지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춘곤, 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윤기섭, 윤종복, 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허 훈, 황철규 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자동차관리법」이 2024년 2월(시행 2025년 2월)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어 조례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운영적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 중 등록번호판의 봉인 업무를 제외하고 제작·발급 업무로 함(안 제2조제1호).

나.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(안 제6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자동차관리법」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조”를 “조례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”로, “지정시”를 “지정 시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”를 ““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”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”로, “제작·발급 및 봉인”을 “제작·발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자동차관리법 제20조”를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”를 “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대행자지정”을 각각 “대행자 지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, 같

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심의위원회"를 "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과반수 이상"을 "재적위원 과반수 이상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중 "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"를 "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"로 한다.

제8조의2제2항 중 "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"을 "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"을 "「자동차관리법」 제21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자동차관리법」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---------- 지정 시 --------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.
1.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.	1. “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”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---------- 제작·발급 ----------.
2. “대행자 지정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	2. ---------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---------- --------.
제4조(대행자의 지정방법)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찰이	제4조(대행자의 지정방법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

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	----------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----------.
제6조(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대행자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6조(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) ① ---- 대행자 지정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	2. 대행자 지정----------
3. 대행자지정 업체수와 사업구역지정에 관한 사항	3. 대행자 지정 ----------
4. 그 밖의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	4. ------ 대행자 지정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가,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	④ ---------- 위원회----------.

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	⑤ ---------- --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----- ----------.
⑤ (생 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<삭 제>
<신 설>	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7조(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) 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1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	제7조(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) ① ---------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- ----------

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	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) ① (생 략)	제8조의2(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제3항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대행자지정의 취소 등)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.	제10조(대행자지정의 취소 등) -----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1조제1항----------.

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자동차관리법」이 2024년 2월(시행 2025년 2월)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어 조례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등 운영적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	☏ 02-2180-7952
	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